

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
(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15호
- 나. 제 출 자 : 정재동 의원,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2. 제안이유

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청년 창업 지원(안 제5조)
- 다.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(안 제9조)
- 라. 창업지원센터 입주(안 제10조)

4.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 및 제10조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6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 및 제10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년창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
-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혁신주체인 청년을 위한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다만, 창업 관련 지원은 창업률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한 바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[시행 2022. 12. 1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전부개정]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(이하 “신산업·기술 창업”이라 한다)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예비재창업자, 재창업기업 등(이하 “창업기업등”이라 한다)의 기술성, 사업성, 혁신성,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,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·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·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창업기업등의 발굴·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
2.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
3. 기업,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·육성

4.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
5.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
6.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
7.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·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, 가공,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
1.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
2.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(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)
3. 장애인(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)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(창업기업 대표자가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)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창업 관련 단체, 창업기업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출연·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[시행 2023. 2. 7.] [대통령령 제33245호, 2023. 2. 7., 일부개정]

제6조(창업 활성화 지원사업)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(이하 “창업기업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
2. 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